

광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03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827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0344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정경준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변론종결 2023. 5. 24.

판결선고 2023. 7. 12.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90,308,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308,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O 원고는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 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약정구분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만기일자	약정본인	보증인	적용 이율
여신거래 약정서	150,000,000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2.07.10.	2017.07.06.	C	없음	기준금리 + 3.64%

O 원고는 C와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약정을 하였다.

계약일시	내용	비고
2013. 7. 9.	변제기를 2013. 7. 9.에서 2014. 1. 9.로 연장	을 제8호증의 1
2015. 1. 9.	변제기를 2015. 1. 9.에서 2016. 1. 8.로 연장	을 제8호증의 2
2017. 1. 6.	변제기를 2017. 1. 6.에서 2017. 7. 6.로 연장	을 제8호증의 3

O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을 변제기한인 2017. 7. 6.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2017차7631 대여금 사건)을 하여, 지급명령이 2018. 1. 12. 확정되었고, 2022. 1. 24.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190,308,849원이다.

순번	계좌번호	미회수원금	연체이자	합계	연체 이율	연체이자 최종산출일
1	(계좌번호 1)	113,850,343	76,458,506	190,308,849	15%	2022.01.24.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 및 경과]

O C은 피고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농민들 사이의 금전거래계좌를 관리하였었는데, 2015.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서 C 본인이나 친척, 지인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O C은 피고에게, 2017. 2. 7.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180,000,000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각 매도했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 3. 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서 매매계약으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매매계약이 대물변제계약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2009. 12.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해지를 원인으로 2017. 7. 26.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2011. 6.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해지를 원인으로 2017. 6. 13.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는 전세권자 대한민국, 전세금 155,000,000원의 2015. 3. 2.자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해지를 원인으로 2020. 2. 25. 말소되었다.

O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는 2017. 5. 20. 소외 E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E은 2020. 2. 8. F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가 2017. 5. 25. G에게 186,000,000원에 매도하여 2017. 7.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가 2017. 5. 27. H에게 175,000,000원에 매도하여 2017. 6.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C에 대한 소송경과]

원고는 경리로 근무하던 C이 회사 자금 1,308,883,157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7283호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8. 2.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던 2017. 12. 27. 이전에 C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C이 이 사건 대출 여신거래약정 당시 거주 아파트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검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 16.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함으로써 C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횡령행위로 인한 1,622,340,637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C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

1)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행 근저당권등기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행 전세권등기가 말소된 이상,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행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¹⁾은 342,000,000원이고, 선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2,0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259,000,000원이고 선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6,000,0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은 300,000,000원이고 선행 전세권의 전세금은 155,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액인 901,000,000원(342,000,000원 + 259,000,000원 + 300,000,000원)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액인

323,000,000원(72,000,000원 + 96,000,000원 + 155,000,000원)을 190,308,84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90,308,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90,308,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별지]

제1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칠근콘크리트조

면 적 3층 호 92.39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5364.7㎡2.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5345.3㎡

대지권의 종류 소유 권

대지권의 종류 30710분의 53.197

제2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 적 4층 호 92.78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5340.5㎡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5359.2㎡

대지권의 종류 소유 권

대지권의 종류 30699.7분의 52.420

제3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층 호 102.95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8773.7㎡

대지권의 종류 소유 권

대지권의 종류 18773.7의 57.176

-끝-

1)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근접한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였다.